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5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9.

발 의 자 : 김태선 · 이병진 · 장철민
윤후덕 · 장경태 · 이용우
박 정 · 한병도 · 한준호
정태호 · 서영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,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 대가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사업장의 여건이나 업무부담 등에 따라 유급휴가를 연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아 연차 유급휴가의 저축사용 및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일정한 금전보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또한, 현재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하고, 80%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, 단기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근로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근무하고 70% 이상 출근한 경우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

도록 제도를 개편하고자 합니다. 또한,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 중 5일 이내의 휴가 기간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의 30퍼센트 이내의 기간을 저축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저축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 연차 유급휴가일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5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60조 및 제61조의2 신설).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1항 중 “1년간 80퍼센트”를 “6개월간 7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년간 80퍼센트”를 “6개월간 70퍼센트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
2. 근로자가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휴가를 신청하는 경우

제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1조의2(저축휴가 등) ① 사용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5일 이내의 휴가 기간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간의 30퍼센트 이내의 기간을 저축하여 그 다음 연도부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휴가(이하 “저축휴가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저축휴가는 최대 3년의 기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하지 아니한 저축휴가는 소멸한다.

③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

중에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연차 유급휴가일 중 5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할 수 있다.

④ 저축휴가의 신청 절차 및 사용방식,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사용자는 <u>1년간 80퍼센트 이상</u>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	제60조(연차 유급휴가) ① ----- --- <u>6개월간 70퍼센트</u> ----- ----- -----.
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<u>1년간 80퍼센트 미만</u>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	② ----- ----- -- <u>6개월간 70퍼센트</u> ----- ----- -----.
③ ~ ⑥ (생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제1항·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(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)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. 다만, <u>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	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<신설>	1. <u>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</u>
<신설>	2. <u>근로자가 제61조의2제1항에</u>

<신 설>

따른 저축휴가를 신청하는 경
우

제61조의2(저축휴가 등) ① 사용
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
휴가일 중 근로자가 사용하지
아니한 5일 이내의 휴가 기간
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기
간의 30퍼센트 이내의 기간을
저축하여 그 다음 연도부터 근
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
는 휴가(이하 “저축휴가”라 한
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저축휴가는 최대 3년의 기
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, 사용
하지 아니한 저축휴가는 소멸
한다.

③ 제61조에도 불구하고 사용
자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
휴가일 중에서 근로자가 사용
하지 못하는 연차 유급휴가일
중 5일 이내의 기간에 대하여
금전보상을 할 수 있다.

④ 저축휴가의 신청 절차 및
사용방식, 제3항에 따른 금전보
상에 필요한 사항은 사용자와
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

하여 정한다.